

# FTA BRIEF

Vol. 09

November 2024

FTA 원산지 검증에 대한

수출입 기업의 사전대비 포인트



한국원산지정보원

#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발행인 김일권

발행처 한국원산지정보원

발행일 2024년 12월 03일

주 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205번길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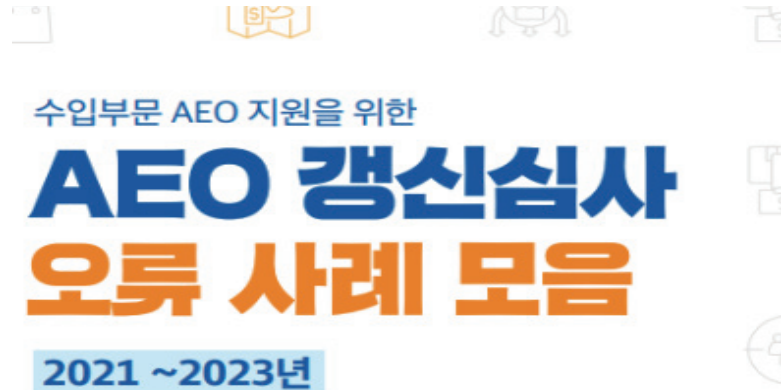
전화 031-600-0769

홈페이지 [www.origin.or.kr](http://www.origin.or.kr)

ISSN 3022-7984

Copyright ©2024 by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원산지정보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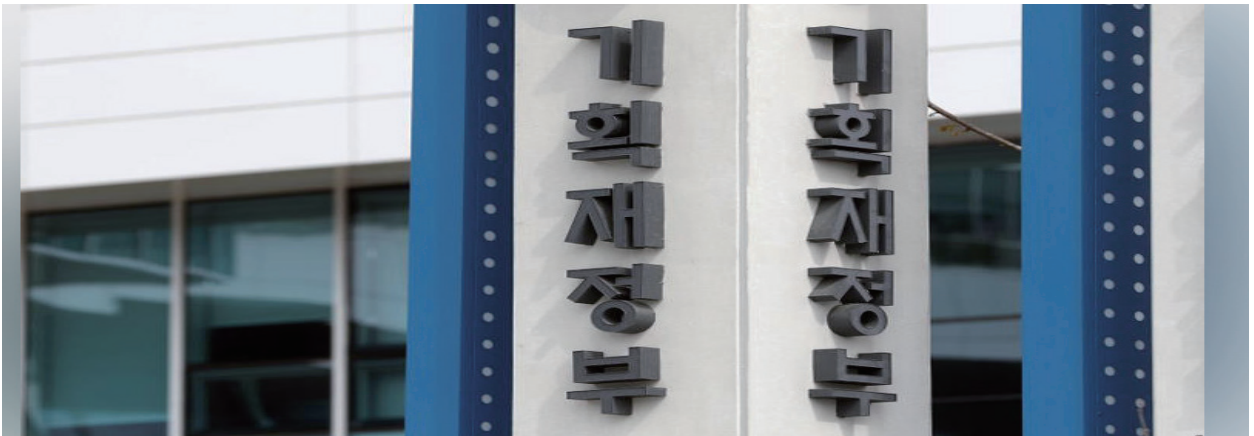


\* 사진 출처 : 관세청

### 관세청, 수입부문 AEO 지원을 위한 'AEO 갱신심사 오류사례 모음' 발간

- ☑ 관세청(대구세관)은 수입부문 AEO 공인업체가 갱신심사 과정에서 통관적법성 심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사례 모음집을 발간하였다.
- ☑ 오류 사례 유형으로는 관세평가 시 가산요소 누락 및 관세감면 등을 포함한 통관적법성 위반 사례 18개를 소개하고 있으며, 예시들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 ☑ 해당 자료는 관세청-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입부문 AEO 인증업체가 통관적법성 심사를 대비하고 업무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 기획재정부, 2025년부터 일·호주·뉴질랜드 수출 시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사진 출처 : 뉴시스

- ☑ 국내 기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일본·호주·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 ☑ RCEP 협정은 '기관증명제도'와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제도'를 통해 원산지 증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업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토록 하는 자율증명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 국내 기업들은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경우, 세관·대한상의를 거치지 않고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게 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됨을 기대할 수 있다.

# FTA 원산지 검증에 대한 수출입 기업의 사전대비 포인트



-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원산지 검증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사전에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
- 원산지 검증 절차 이외에 실무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관점을 수출자와 수입자로 나누어 원산지 검증 대비 포인트 제공

[ 글\_황정훈 한국원산지정보원 정보분석팀장 ]

## 1. 들어가며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무역적자국인 우리나라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관세 등 무역제재를 부과하거나 협정에 따른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신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수출업체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최근 한류 열풍과 높은 상품성 때문에 K-브랜드<sup>1)</sup> 수출상품이 확대 되고 있으나 수출업체들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부담은 장기적으로 수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산지 검증 대응 체계가 잘 구축된 대기업들과는 달리 중소기업들은 원산지 검증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뿐더러, 전문인력, 협력사 협업, 원산지 관리 시스템 미도입 등 원산지 검증 대응 체계가 미비<sup>2)</sup> 한 실태이다.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산지 검증 대응 컨설팅 및 교육사업이 수행되고 있지만 수출기업 약 26만 개 사<sup>3)</sup>에 대한 원산지 검증 이해 증진과 검증 대응 체계 구축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공개된 원산지 검증 통계를<sup>4)</sup> 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건수는 783건이며, 우리나라 수입물품 원산지 검증건수는 75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튀르키예의 원산지 검증은 543건으로 전체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중 약 69%를 차지하였다.

1) K-브랜드란 Korea의 첫 글자인 'K'와 상표를 뜻하는 '브랜드'가 결합된 용어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에 마케팅적 요소를 더한 대한국민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

2) FTA 원산지 사후검증 현황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2016)

3) 무역활동 기업(수출·수입) 기업통계, 관세청(2023)

4) 검증 통계 출처 : 수출물품-관세청, 수입물품-김주영 의원실

이러한 튀르키예의 원산지 검증 강화조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수입신고 수리 이후 검증을 수행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튀르키예는 원산지가 확인되기 전까지 통관을 보류하거나 담보를 요구하는 동향이 있어 통관지체 및 수입업체 부담이 가중되어 수출입자 모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FTA 수출입 활용기업들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FTA 활용도 중요하지만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기존에 발간된 원산지 검증 절차 안내 및 대응자료와 달리 우리 기업이 원산지 검증 전 실무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포인트를 수출자와 수입자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 2. 원산지 검증 대상의 이해



원산지 검증은 검증 주체에 따라 협정별로 간접검증, 직접검증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검증방식은 원산지 위반에 대한 판단주체가 수입국인지 수출국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원산지 검증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하여 원산지 검증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FTA 관세특례법 제17조 내지 18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에 대한 조사(검증)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나라 수입자,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 계약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원산지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와 물품을 거래, 유통, 운송, 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를 원산지 검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접검증

직접검증



즉, 최종 상품을 수출입한 자 이외에도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공급한 자 또는 생산한 자도 원산지 검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출자의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자료 진위 여부, 오류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제17조 내지 18조 (요약)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 3. 수입자 원산지 검증 사전 대비 포인트



수입자는 수입 관세당국으로부터 FTA 원산지 검증으로 협정적용 배제 판정을 받은 경우 실제로 관세 추징과 가산세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이다.

수입자는 계약상대국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수입물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를 적용신청하게 된다. 이때 수입자는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다.

수입자가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수출물품 생산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FTA 원산지 판정 결과가 적정한지 여부를 원산지 판정 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입기업들은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 능력과 결과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수입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수입물품 원산지검증에 대응해 나간다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01 매매계약서에 FTA 관련 당사자간 책임소재 명시

국제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물품에 대한 가격과 인도 조건 등이 기재된 상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시작된다. FTA를 활용하여 수입하는 매수인인 수입자의 경우 계약당시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오류, 허위작성, 그리고 원산지 검증 시 입증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상 FTA 관련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 원산지 검증은 수입통관 이후에 실시된다. 원산지 검증 진행 중에 있는 수입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 받는 서류 및 증빙내용을 수출자에게 즉시 요청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수입자의 갑작스러운 요구는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경우 수출자의 자료협조 거부, 지연 제출, 추가 비용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간 매매계약서 작성 시 FTA 관련 준수 조항을 삽입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산지 검증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매매계약 시 삽입할 수 있는 FTA 관련 책임관계를 규정한 약정의 예시이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FTA 협정에 따라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 FTA Compliance Clause Sample

**1. Certificate of Origin and Documentation**

The Seller shall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accurate and valid Certificates of Origin and any related documentation necessary to enable the Buyer to benefit from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applicable FTAs.

Any inaccuracies or omissions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or supporting documentation shall be the Seller's liability, and the Seller agrees to bear all associated costs, penalties, or damages resulting from such errors.

**2. Adherence to FTA Regulations**

Both parties agree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and regulations of any applicable Free Trade Agreement relevant to this transaction.

Any fines, penalties, or costs incurred due to non-compliance with FTA provisions will be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non-compliant party.

**3. Resolution of Disputes Related to FTA Compliance**

In the event of any dispute related to FTA compliance or the provision of necessary documentation, the parties agree to engage in good-faith negotiations to resolve the issue.

If negotiations fail, the dispute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the rules of a mutually agreed-upon arbitration body, with the arbitration decision being final and binding.

**1. 원산지 증명서 및 관련 서류**

매도인은 구매자가 해당 FTA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고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나 관련 서류의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비용, 벌금 또는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2. FTA 규정 준수**

양 당사자는 본 거래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요구 사항과 규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FTA 조항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 패널티 또는 비용은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3. FTA 준수 관련 분쟁 해결**

FTA 준수 또는 필요한 서류 제공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 분쟁은 상호 합의된 중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집니다.

\* 관련 내용은 작성 예시로 실제 계약서 작성시 거래 상황에 맞게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함



## 02 수출자와의 검증 협업

FTA 활용 절차에 따라 수입자는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수입물품 FTA 협정관세를 신청한다.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입자 우선 조사 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먼저 수입자에게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진위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수입자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한 서류가 원산지 판정의 최종 서류인 원산지 증명서만 수취하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이 적절한 것인지 원산지 증명서 근거서류 등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이 매우 어렵다. 특히 자율발급의 경우 기관발급과는 달리 발급기관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확인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특히 수입자가 유념하여야 한다.

한편 수입자는 수입물품 원산지 검증에 있어서 수출자의 조력 없이는 원산지 검증 소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원산지 검증에 있어서 관세 추징은 수입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성실한 수입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허위 또는 과실로 인한 원산지 증명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수입업체가 부담지게 된다.

이러한 수입업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자와 수출자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상시 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자는 특혜관세 배제를 피하려면 원산지검증 대응에 있어서 수출자와 신속히 협력하여 필요한 원산지 판정 근거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료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입물품 원산지 검증 제척기간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이다. 만약 수출자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폐업을 하거나 불가항력 사항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산지 검증으로 특혜가 배제되는 경우 관세 추징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수출자 폐업 이후에도 수출자는 관련 법에 따라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

## 03 인증수출자번호 재확인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서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신고문안만 상업송장 등에 기재하는 자율발급 방식이다.

수입자는 수출자의 원산지신고 문안과 인증수출자번호<sup>9)</sup>가 기재된 상업송장 등의 서류를 수취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수입자가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기재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적정한지 여부이다.

실제로 한-EU FTA 적용을 위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 신고서를 요청하였으나 EU 수출자는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닌 EU 전자수출신고 허가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사소한 실수로 FTA 협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존재한다.

EU 각국에는 전자수출신고 허가번호, EORI 번호, 특별소비세 식별번호 등이 인증수출자 번호와 오인할 소지가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네덜란드 예시

EORI 번호 : NL85612003

한-EU FTA 네덜란드 인증수출자 번호 : NL/856/12/0030

\* EORI 번호란 '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U내에서 상품의 수출입 등 물품의 이동주체에게 부여하는 EU 기업의 고유 식별번호

#### 독일 예시

EU 전자수출신고 허가번호 : D/8561/ZA/0030

한-EU FTA 독일 인증수출자 번호 : DE/8561/EA/0030

\* 독일 전자수출 신고 허가번호란 수출신고를 위한 통관 단순화 절차 이행을 위한 허가 번호

\* ZA(Zugelassener Ausfuhrer), EA(Ermachtigter Ausfuhrer)은 모두 영어로 인증수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

\*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의 경우 회원국들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확인이 필요

◎ 자료 출처 : 관세청 FTA 포털

따라서 수입자는 해당 특혜 수입건에 대하여 원산지 신고서 수취 전에 수출자에게 한-EU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및 인증수출자 유효성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 04 수입자 발급 원산지증명서 주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협정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본지사간 거래이거나 수출자와 수입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정보를 수취하여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출자와 수입자와의 관계에 있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원산지 판정 정보인, 투입원재료, 원가, 부가가치 등의 생산관련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6)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관세당국은 비특수관계자들 간의 수입자 C/O 발행에 있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아닌 수입자의 경우 관세당국의 검증 대상이 될 위험이 높으니 수입자 C/O 발급은 반드시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는 경우에 수입자 C/O를 발급하여야 한다.

#### 4. 수출자 원산지 검증 사전 체크 포인트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 절차의 최종 서류인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는 주체이자 판정된 원산지에 대한 책임의 주체이기도 하다. 또한 원산지 검증에 대한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자는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잘못된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특혜배제 조치로 상대국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특혜 관세 취소에 따른 관세 추징액을 보상하여야 할 수도 있다. 더불어 원산지 검증으로 인하여 통관지체가 수입 상대국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보상도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은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출판로가 막히거나 국가 대외신인도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수출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수출물품 원산지검증에 대응해 나간다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01 정확한 원산지 판정

수출자의 원산지 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다.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신뢰성을 검토하고 FTA 협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잘 준수하여야 한다.

수출기업들은 수출 건별로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원산지 판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투입된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성도 검토하여야 한다.

사소한 부주의가 원산지 검증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원산지 검증 대비의 기본이다.

## 02 원산지 검증 대응 전문 인력 구성

원산지 검증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무역협회 보고서<sup>7)</sup>에 따르면 자사의 원산지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설문에서 32.8%만이 대응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59.8%는 취약하다고 응답하여 우리 수출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 역량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소수의 원산지 관리 인력을 통해 원산지 발급, 협력사 관리, 수출입 통관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어 원산지 관리에 매우 취약하다.

원산지 검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외부 FTA 원산지 검증 대응 인력을 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원산지 사후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정부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사업이나 원산지 검증 교육을 통하여 원산지 검증 대응 역량을 배양하여 수출검증에 대응하여야 한다.

내부적으로 원산지 사후관리 전담인력 배치가 어려운 경우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원산지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전사적(Enterprise)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특정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적정성 이외에도 원산지 검증시 수출업체가 입증을 요청받는 서류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 **업체의 생산설비 현황**, ㉡ **연간 생산량**, ㉢ **업체의 관리 조직 및 인력현황**, ㉣ **원산지 관리 매뉴얼 유무**, ㉤ **IFRS 회계자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검증 대응 시 부서간 협력을 통하여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03 원재료 공급사(협력사) 관리

수출자가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원재료의 역내산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원산지 (포괄)확인서의 수취가 매우 중요하다.

수출할 물품의 원재료 공급자(협력사)는 원재료를<sup>8)</sup> 공급함에 있어서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한 서류인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기초원재료부터 수출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중간재 공급자까지 이어지는 원산지 확인서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7) FTA 원산지 사후검증 현황 및 시사점, 무역협회(2016)

8) 기초 원재료, 기초원재료를 투입하여 제조한 2차 원재료, 중간재 등 수출할 물품에 부가되는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의 내용이 기초 원재료 거래단계부터 잘못 판정이 된다면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출자의 경우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협력사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발급에 대한 요청은 원재료 구매자인 수출자의 요청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도 원산지 확인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는 구매자가 하기 힘들다.

정확성 검토를 위해서는 수출자가 원재료 공급자가 공급한 물품의 투입 원재료 내역 및 원가내역 등을 열람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재료 공급자는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 하길 꺼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자는 원재료 공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협업을 통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 원산지 관리 시스템

원산지 포괄확인서 발급업체, 수출업체 모두 원산지 관리시스템(예 : FTA-PASS)을 통하여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발급 및 수취 할 수 있음

원산지 관리시스템에 탑재된 원산지 판정기준 기능을 활용하여 FTA 원산지 판정 지식 이 부족한 업체라도 원재료 내역서(Bill of material) 등을 입력하면 손쉽게 원산지 판정이 가능함

#### 04 자료보관 의무

물품을 수출입하는 자는 관세법 제12조에 따라 수출입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FTA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협정관세 적용을 하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FTA 관세법 제15조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 대상 원산지 증빙서류는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입증 중심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생산자의 경우 생산사실 중심의 서류, 수입자의 경우 거래사실 중심으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원산지 입증 중심	생산사실 및 수출입자 제공 자료 중심	거래사실 중심
보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증명서 사본</li> <li>✓ C/O 발급 신청서류</li> <li>✓ 수출신고필증</li> <li>✓ 당해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li> <li>✓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li> <li>✓ 원산지 확인서 또는 원산지 소명서</li> <li>✓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li> <li>✓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li> <li>✓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 대장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 제공한 서류</li> <li>✓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li> <li>✓ 당해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li> <li>✓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 사본</li> <li>✓ 수입신고필증</li> <li>✓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li> <li>✓ 지재권 관련 계약서(해)</li> <li>✓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li> <li>✓ 국제운송 관련서류</li> <li>✓ 사전심사서 사본 등(해)</li> </ul>

자료보관 의무는 원산지 검증 대응의 기초이다. 원산지 검증은 수출입 당사자가 보관하고 있는 원산지 증빙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검증 대상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자료보관이 매우 중요하다.

수입 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통관하고 원산지 검증은 수입통관 후 사후적으로 실질적 요건에 대해 검증을 하기 때문에 협정 및 FTA 특례법에서 수출입 당사자에게 자료보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원산지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건별로 업무단계에 따른 원산지 판정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서류에 대한 정합성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자료준비 유의사항**
● ● ●

- 업무 단계의 **순차성이 있는 자료**는 시간적 순서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업무절차는 각 단계별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원산지 증빙 자료도 업무 단계에 따라 작성**
- 그런데 **특정 원재료의 입고일이** 그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한 **제품의 출고일보다 늦은 날짜로 기재되어 있다면** 증빙자료 진위에 의심을 가질 수 있다.
- 모든 자료의 품명, 규격은 실제의 품명, 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 생산량 또는 판매량(수출량)과 관련된 자료는 **업체의 생산 설비, 인원 수 등 생산능력에 비례하여 합리적**이어야 한다.

**세관의 검증관련 확인사항**
● ● ●

- 각 거래단계별 현황과 서류상의 내역이 일치하여야 한다. **거래가 없음에도 서류에는 기재** 되어 있거나 반대로 **거래가 있었지만 서류에는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위에 의심을 갖게 된다. 모든 자료의 품명, 규격은 **실제의 품명, 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 원재료명세서(BOM)는 실제 원재료 내역과 일치해야 하며, **원재료명세서에 규격, 단가, 수량, 원재료의 원산지, HS부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원산지증빙자료로서 적정하다.
- 원산지결정기준 중 세번변경기준에서는 상품과 원재료의 HS부호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므로 **HS부호 분류 근거**를 정확하고 타당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5. 마무리하며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은 다양한 관세 또는 비관세 조치를 통해 이행될 수 있으며 특히 한-미 FTA 협정상 규정된 원산지 검증 조치를 통하여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모두 FTA 협정에 명시된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고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검증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즉, 과거의 협정관세 적용 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하여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본 글은 기존 발간되었던 원산지 검증 대응 자료들과는 달리 실무적 관점에서 수입자 및 수출자의 입장에서 원산지 검증 대응의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알리고자 하였다.

FTA를 활용하여 수출입하는 업체들은 원산지 검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 FTA BRIEF

Vol. 09 | November 2024



한국원산지정보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